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부서)의 장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1-54호
2021. 7. 9.(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훈령 제459호) …… 1

고 시(2)

-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고시 제2021-73호) …… 17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1-74호) …… 18

공 고(4)

-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758호) …… 19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공고 제2021-761호) …… 20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공고 제2021-767호) …… 21
-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공람·공고(공고 제2021-777호) · 22

행정예고(1)

-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추가 행정예고(공고 제2021-773호) ·· 30

공람									

발행: 대전광역시 대덕구 / 편집: 기획홍보실(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 608-6602)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 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5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 전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13조제5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구성원(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과 구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실태 및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여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에서 배제하고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의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이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구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6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구성원들의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있는 지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원의 책무) 구 소속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8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은 여성가족과장이 되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남성 및 여성 공무원 각 1명 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2. 인사 또는 복무담당공무원
3. 외부전문가(성희롱, 성폭력, 양성평등 관련 분야)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 직원에게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과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 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사진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피해자등이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등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등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등의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⑥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⑦ 피해자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⑨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실장, 운영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여성공무원(6급 이상) 2명, 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남성・여성 각 1명과 성희롱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2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⑥ 구청장은 조사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대리인)		고충내용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상담원 (담당자)	책임관 (과장)

[별지 제2호서식]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위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담(신청)내용	※ 6하 원칙에 의해 신청이유, 취지,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그 밖의 사항 (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고,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피해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며, 여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과 피해자 신변보호 등 조치 방안을 마련자체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의 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을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으로 변경함(제명).

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다.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예방교육의 실시 및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11조).

마. 사건의 조사·행위자 징계 조사결과 통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및 제14조, 제17조).

바.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1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73호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준공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명칭) 오정동 465-30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465-30, 465-31번지
   나. (면적) 350.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오정동 465-30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대표자 김영기
   나.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223, 3동 1407호(둔산동, 청솔아파트)
4. (준공인가 연월일) 2021. 7. 9.
5. (준공인가 내역)

구 분	용 도	구 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비 고
오정동465-30 외 1필지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350.2㎡	209.9975㎡ (59.97%)	659.2324㎡ (188.24%)	지상 1~5 층 (12세대)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1-7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 여 사 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238-25	오정로64번길 21	2021. 7. 9.	건물신축	오정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64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대동 411-35	신탄진로115번안길 16	2021. 7. 9.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신대동 411-38	신탄진로115번안길 12	2021. 7. 9.	건물신축	신탄진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1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신대동 452-1	갑천도시고속도로 1125	2021. 7. 9.	건물신축	대전시 도시계획 도로명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58호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72-34번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172-34	8.1㎡	0.5m	12.5m	한*수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61호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 지정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75-10번지 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지정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하는 사항

구 분	위 치	도 로 구 분			소유자
		면 적	너 비	길 이	
건축법상 도로지정	신탄진동 175-10번지	40㎡	2m	38.7m	이*훈

2. 기 타

위 사항에 대한 관련도서는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53)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67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 안내

대덕구 2021년('20년도 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내용: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신청 / 대상요건 충족자에 한함
2. 대상자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1973년 6월 27일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나. 소득기준은 통계청 발표 전년도(2019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89,781원 이하 가구
   ※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조건을 충족해도 제외됨.
3. 지원내용
   가. 지원금 상한액 1,000천원
   나. 2020년도 사용한 학자금, 전기, 가스, 상수도,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
4. 신청기간: 2021. 8. 6. ~ 2021. 8. 17.까지
5. 첨부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등 작성 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접수
6.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홍다경(☎ 042-608-6873)
   ※ 위 조건 충족자는 기간 내 필히 신청바람. 미 신청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77호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공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에 대한 대상구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람기간: 2021. 7. 9. ~ 7. 26. (17일간)
2. 공람내용: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추진관련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제한)에 관한 사항
3. 공람방법: 대덕구청 홈페이지
4.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1. 7. 26.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제출
   다. 제출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택정책과 도시경관팀
   라.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대덕구청 1층 주택정책과 도시경관팀(전화 042-608-5182)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양식 1부.
2.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1. 사 업 명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2. 의견제출자	성 명		업 소 명	(호)
	연 락 처		소유권 구분	□건물주 □업소주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_____(동)		
3. 의 견				
4. 기 타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7월 일

의견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비 고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기한 : 2021.7.26.(월)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안)

「옥외광고물법」 제4조의3, 동법 시행령 제2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2021년 도시환경조성 간판개선사업 구간**을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간판 개선과 지속적 유지 관리를 위해 광고물 등의 수량·위치·규격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28조 및「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먹자골목(신탄진동로 7번길)
2. 지정구간 세부 도로명 주소 및 위치도: [붙임 지정현황]
   - 대청로 6, 8
   - 신탄진동로 7번길 55, 58, 59, 60, 61, 63, 64, 67, 69, 72, 74, 75, 76, 78
   - 신탄진동로 7번안길 2, 3
   - 신탄진로 810번길 6, 12, 13
3. 도로변에 접한 건물 적용

제4조(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2개 이하로 한다

②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사용을 자제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 및 에너지절약형 조명(LED 등으로 광원이 직접 비노출에 한함)의 사용을 권장한다.

③ 커튼 월 〔Curtain Wall(비내력외벽)〕 공법으로 마감된 유리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다만 창틀 또는 구조물을 이용하여 게시틀을 설치하고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의 주표시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한글 표기 아래에 표시할 수 있다.

⑤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문자,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적색류 또는 흑색류는 광고물의 50% 이내로 사용하며 건축물 및 업소의 성격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⑦ 업소를 특정 짓고 차별할 수 있도록 앰블렘, 픽토그램 등 사용을 권장한다.

⑧ 신고 배제 광고물의 경우에도 업소별 광고물의 총수량, 크기, 표시방법 등에 대한 제한사항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1개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일 경우 1개의 간판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건물의 외벽 훼손 방지 및 간판 교체가 용이하도록 입체형 간판은 게시틀을 설치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게시틀은 광고물 세로 높이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물의 외부 미관을 보호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판류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판류형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층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간판의 글자크기는 65㎝ 이내, 가로크기는 최대 10m 이내 또는 가로폭의 80%, 세로크기는 80m 이내, 최대 건물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6조(돌출간판의 표시방법)

① 1면의 면적이 0.36㎡이내이고, 두께가 0.2m 이하인 소형 돌출간판으로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 표시등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여 연립형으로 건물의 벽면에서 동일한

크기로 위·아래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일관되게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의 좌·우측면 모서리 중 한쪽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한 도로에서 건물 주출입구가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이거나 지하 또는 건물 구조상 다른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내로 한다.

제8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창문 이용 광고물은 1층에 한하여 건물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상호, 전화번호,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접착성이 있는 비닐, 종이 등의 재질로 안전띠 개념으로 한 줄로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하여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20cm 이내로 가로 쓰기를 하여야 한다.

③ 표시 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4 이내로서 최대 1㎡이내로 한다.

④ 전광류는 사용을 금지한다.

제9조(표시금지 광고물) 옥상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입간판, 현수막은 설치를 금지한다. 다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정비시범구역 내 모든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건물주 등은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계약서상에 옥외광고물 정비시범구역임을 명시하여 분양계약자 및 세입자가 정비시범구역 고시 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적용의 특례) 구청장은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적용이 불합리한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기타사항)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영, 시 조례, 구 조례를 준용한다.

❑ 위치도 및 현황

○ 신탄진동로 7번길(신탄진동 먹자골목)

위치도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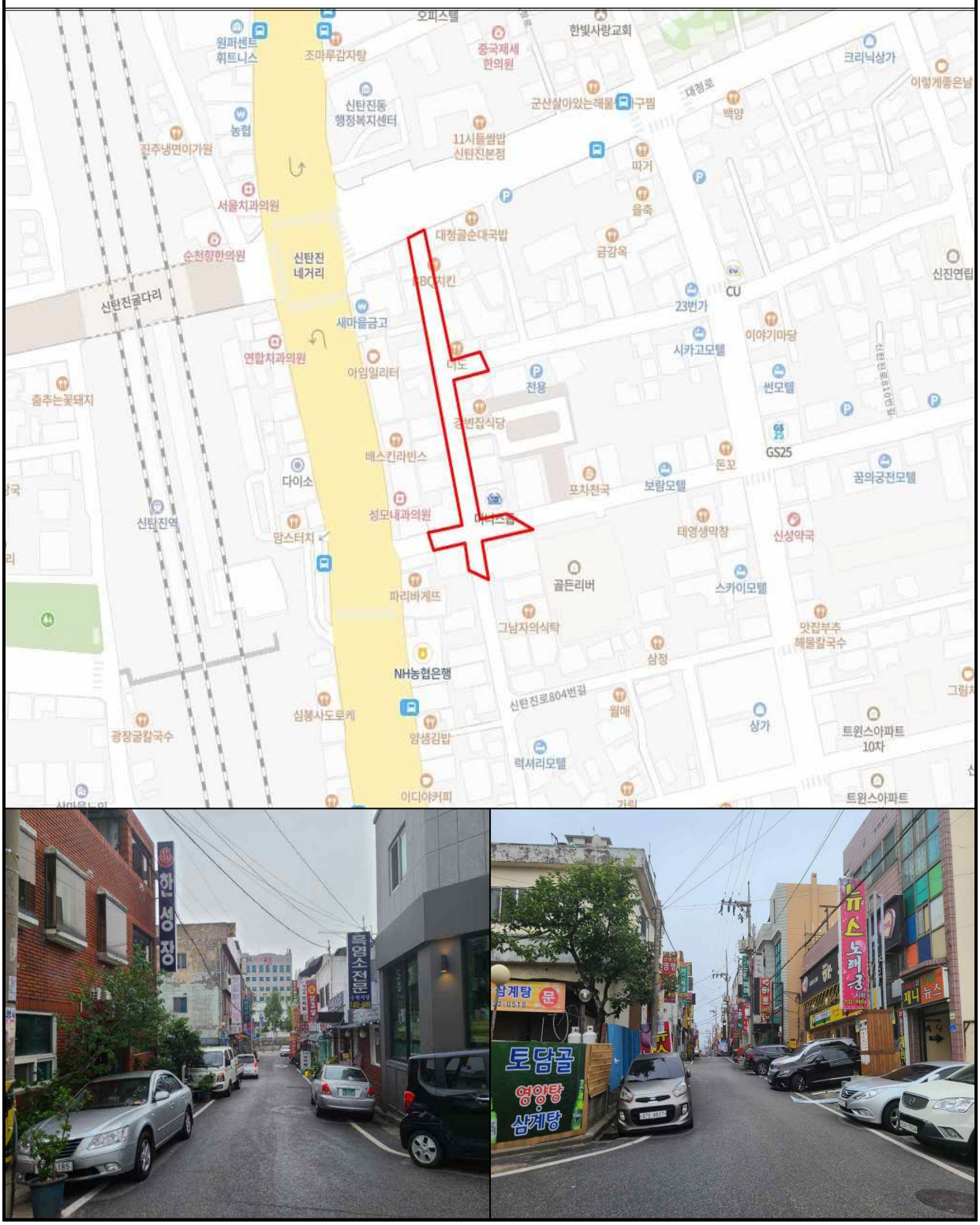

❑ 지정구역 상세주소

구분	지정구역(도로명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6
	대청로 8
	신탄진동로 7번길 55
	신탄진동로 7번길 58
	신탄진동로 7번길 59
	신탄진동로 7번길 60
	신탄진동로 7번길 61
	신탄진동로 7번길 63
	신탄진동로 7번길 64
	신탄진동로 7번길 67
	신탄진동로 7번길 69
	신탄진동로 7번길 72
	신탄진동로 7번길 74
	신탄진동로 7번길 75
	신탄진동로 7번길 76
	신탄진동로 7번길 78
	신탄진동로 7번안길 2
	신탄진동로 7번안길 3
	신탄진로 810번길 6
	신탄진로 810번길 12
	신탄진로 810번길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1-773호

2021년 방범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추가 행정예고

주택가, 우범지역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주민이 행복한 대덕구 조성을 위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방범용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행정예고 내용: 관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설치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로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히 대응코자함
4. 설치장소: 방범용(2개소 / 2대)【첨부1】
5. 촬영범위 및 시간: CCTV설치 구역 반경 50m, 24시간 연속 촬영
6. 예고기간: 2021. 7. 9 ~ 2021. 7. 29(20일간)
7.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홈페이지(http://www.daedeok.go.kr)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7. 29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제출서식: 【첨부2】 참조

라. 제출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

마. 제출 및 문의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전 대덕구청 자치분권과(☎ 042-608-6097 fax 042-608-3939). 끝.

【첨부1】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연번	행정동	위 치	개소	대수		비고
				회전	고정	
계		3개소 / 4대	3	2	2	
1	덕암동	덕암북로4번길 170	1		2	
2	회덕동	장동로277-9	1	1		
3	덕암동	덕암로265번길 59	1	1		
		이 하 여 백				

【첨부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대전 대덕구 방범용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